

<b>의안 번호</b>	921	<b>【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b> <b>검 토 보 고 서</b>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12. 08. 29(수)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8. 29(수)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9. 07(금)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북정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총괄

○ 취득대상 재산

- 토 지 : 2필지 1,653.96㎡ 1,800,000천원

(단위 : ㎡, 천원)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소재지	면적	금액	소재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성안동 808-2	1,248	1,800,000	성안동 851-3	853.16	930,000	증 1	증 405.96	-
			성안동 851-7	800.80	870,000			

나. 취득대상 토지현황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추정금액	소유자	취득사유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1,653.96	899,677	1,800,000		
1	성안동 851-3	대	2,793.1	853.16	528,106	930,000	국 (기획재정부)	북정동주민 센터부지
2	성안동 851-7	대	2,026.5	800.80	371,571	870,000	국 (기획재정부)	"

## 나. 변경취득 사유

- 2012. 5. 31 북정동 주민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성안동 851-3번지로 선정, 변경 취득코자 함.
- 신축할 성안동 808-2번지 부지는 좁아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안 주도로를 접하지 않아 접근성 미흡

##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 5. 참고 사항

-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1부
-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6. 검토의견

### □ 관련법령검토

-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1건당 취득·처분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 일 경우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이상일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 연도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음.

□ 변경취득 사유

- ▶ 2012.5.31일 19:00성안초등학교에서 북정동 주민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시 당초 선정된 성안동 808-2번지는 부지가 좁고, 성안동 주도로를 접하지 않아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의견

- ▶ 성안동 주민센터 부지 선정은 주민센터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는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당초계획보다 토지가 405.9제곱미터가 늘어나는데 매입비는 당초 계획된 18억원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2012년도 취득대상변경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재지	지목	지 적	편입면적			
계	2필지			1,653.96	1,800,000		
1	성안동 851-3 (토지)	대	2,793.1	853.16	930,000	2012. 9.	북정동 주민센터건립
2	성안동 851-7 (토지)	대	2,026.5	800.80	870,000	2012. 9.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생략)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생략] 및 처분(생략)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생략]개별공시지가[생략],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생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 §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